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282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경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강창묵, 이근창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72,3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0.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018. 2월생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1. 7. 2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접수를 하고 2021. 10. 28. 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C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8. 피고에게 ‘C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보증금 16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3.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1. C과 대출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채권자로서, 그 후 2022. 5. 23.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3154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2. 6. 3.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022. 7. 19.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23. 9. 1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26,998,895원, 이자 및 지연이자 5,673,441원으로서 합계 32,672,3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2022. 7.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무렵 C의 적극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조사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위 2022. 7. 26. 무렵 또는 2022. 8.경에는 C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내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7. 26.경 또는 2022. 8.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21. 7. 8.경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C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만이 이루어졌을 뿐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도 C의 부정행위와 도박 등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매수한 아파트로 보기 어렵고, 설령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중 66,669,752원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며,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2021. 3.부터 10.경까지 사이의 평균 거래가격은 242,777,000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165,000,0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77,777,000원(= 242,777,000원 - 165,000,000원)이고, C와 피고가 1/2 지분씩 소유할 경우의 피고 몫의 지분 상당액은 38,888,500원(= 77,777,000원 ÷ 2)이 된다.

○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C의 소극재산도 분할받아야 할 것이고, C의 소극재산 채무 71,917,505원과 피고의 소극재산 16,355,000원 합계액 중 1/2에 해당하는 27,781,252원이 피고가 분할받을 소극재산이며, 결국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가액은 적극재산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인 38,888,500원에서 피고가 분할받을 소극재산 27,781,252원을 뺀 나머지 11,107,248원(= 38,888,500원 - 27,781,252원)이 된다.

○ 따라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66,669,752원(= 피고가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가액 77,777,000원 -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 가액 11,107,248원)이다.

2) 한편, 2023. 8.경 기준 이 사건 아파트 시가는 246,000,000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을 공제하면 81,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은 32,672,33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의 위 32,672,336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참조),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도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 즉, C과 피고는 협의이혼 신청에 앞서 2021. 7. 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만인 2021. 7. 21.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의 문제를 함께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C이 작성한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 위자료나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당사자 사이에 위자료 관한 협의는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협의이혼시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서류에 불과하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 부부의 위자료에 관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 2021년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조회결과(갑 제3호증의 2)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가까운 2021. 6.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전용면적(59.901㎡) 중 동일한 층수(1층)의 거래가액은 217,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위 금액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년 3.경부터 10.까지 실거래가액 9건의 평균가액인 242,777,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9건 중 8건이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에 위치한 사례들로서 위 1층 사례보다 최대 8,3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1층에 위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거래가액의 평균가를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52,000,000원(= 217,000,000원 - 16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 C과 피고는 2010. 4. 6.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까지 약 11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바, 설령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별도의 수입이 없었다거나 C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그 취득자금에 관한 대출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가 C의 수입과 이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 및 경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면 그 기여도는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분할대상 적극재산 가액은 26,000,000원(= 52,000,000원 × 0.5)이 된다.

라) C과 피고 사이에는 2018. 2월생인 1명의 딸이 있고, C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를 '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2024. 12. 31.까지는 월 700,000원, 2025. 1. 1.부터 2030. 12. 31.까지는 월 900,000원, 2031. 1. 1.부터 2033. 12. 31.까지는 월 1,200,000원, 2034. 1. 1.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월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C이 협의이혼을 마친 다음날인 2021. 10.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8. 30.경까지 약 34개월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만도 23,800,000원(= 700,000원 × 34개월)에 이른다.

마) 그런데 피고는 C이 혼인생활 중 불법도박, 성매매를 일삼으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는 위와 같은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C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C으로부터 별도의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사) 한편 원고는, C의 소극재산인 채무 합계 71,917,505원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내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은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도박 등에 빠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 결국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양육비와 피고 몫의 재산가액의 합계액만 계산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순 가액인 52,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분할이 갖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리라는 점에 관한 C의 인식(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그 최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별지